

2023년도 구미시 핵심부품·소재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(R&D) 대상과제 공고

구미지역 부품·소재 기반 제품개발 중심의 과제 발굴·육성을 위한 『2023년 구미시 핵심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(R&D)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구미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6.7.

구 미 시 장
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명

- 2023년 구미시 핵심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

□ 사업목적

- 구미 지역기업의 소재·부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□ 사업내용(요약)

구분	지원기간	지원유형	지원금	지원과제 수	총 지원예산
신규지원 (자유공모)	1년(단년)	단기상용화	100백만원 이내	2개	200백만원
	2년(다년)	구매연계	200백만원 이내	2개	400백만원
기술이전					

2

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 : 구미지역 제조기반 중견·중소기업(주관기업)

- (주관기업) : 구미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및 공장 소재지)
- (참여기관) : 구미 또는 경북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준)
- ※ 지역연구소(기관), 대학 등은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가능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- 과제별 최대 1억원~2억원 지원(4개 과제 선정)

구분	지원기간	구미시 지원금	지원과제 수	총 지원예산
신규	1년(단년)	100백만원 이내	2개	200백만원
	2년(다년)	200백만원 이내	2개	400백만원

[참고]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수행기간

구분	총 수행기간	당해연도 수행기간
1년(단년)	2023.8.1.~2024.4.30.(09개월)	2023.8.1.~2024.4.30.(09개월)
2년(다년)	2023.8.1.~2025.4.30.(21개월)	

□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

구분	지원분야	주관기관	참여기관	위탁기관
1년(단년)	(단기 상용화) 구미시 중소기업의 부품·소재 기반 중심의 제품개발 중심 지원	구미지역 중견·중소기업	경북지역 내 산·학·연	(필요시) 산·학·연
2년(다년)	(구매연계) 수요기반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			
	(기술이전) 소재·부품 분야의 기술이전 및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·사업화		구미지역 내 학·연	

□ 사업비 구성

○ 총사업비는 지원금,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

※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합으로 산정

※ 지원금 대비 민간부담금 25%,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10%

○ (단년도 과제) 사업비 구성 예시

(단위 : 원)

지원금	민간부담금			총 사업비
	민간현금	민간현물	합계	
100,000,000	2,500,000	22,500,000	25,000,000	125,000,000

○ (다년도 과제) 사업비 구성 예시

(단위 : 원)

구분	지원금	민간부담금			총 사업비
		민간현금	민간현물	합계	
1차년도	100,000,000	2,500,000	22,500,000	25,000,000	125,000,000
2차년도	100,000,000	2,500,000	22,500,000	25,000,000	125,000,000
합계	200,000,000	5,000,000	45,000,000	50,000,000	250,000,000

□ 과제목표(MBO)

구분	단년과제		다년과제	
사업비 구성	지원금(최대1억원)+민간현금+민간현물		지원금(최대 2억원)+민간현금+민간현물	
MBO	구분	목표치	목표치(연간)	비고
	매출증가율	3%이상	1차년도:3%이상 2차년도:5%이상	
	특허/인증	1건 이상	2건 이상	-
	고용창출	지원금 1억 이하 = 1명 이상 지원금 1억 초과 2억 이하 = 2명 이상		다년사업의 경우 1차년도 고용유지시 2차년도 고용인정
	제품적용 기술이전	1건 이상	(기술이전) 과제 해당시	제품적용 및 운영 기술이전의향서
	구매연계	-	(구매연계) 과제 해당시	수요기업의 '구매계약서' 또는 '구매동의서'
	상용화	1건 이상	1건 이상	매출발생
	국내외마케팅	전시회 등 1건 이상		단년도의 경우 차년도 참가 가능
	사업비집행률 기술로	중간평가시 50%이상	중간평가시 50%이상	대상

3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접수기한 : 2023.06.12.(월)~07.07(금) 17:00까지(초과접수 불인정)
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(www.geri.re.kr) 공지사항에서 사업공고 다운로드

□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(thekey@geri.re.kr 또는 gerihhb0811@geri.re.kr)
-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날인된 스캔본 제출
- 이메일 접수 후, 문의처를 통해, 접수 확인 필수

□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 목록	부수		
		원본	사본	
1	사업계획서	서식 1	1	7
2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	1	
3	현금출자(납입) 약약서	서식 3	1	
4	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	1	
5	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참여인력 모두 해당)	서식 5	1	
6	수행기관 신규채용(예정) 인력 확인서	서식 6	1	
7	구매 의향서(해당시)	서식 7	1	
8	기술이전 의향서(해당시)	서식 8	1	
9	수행기관(주관/참여)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시) 각 1부	필수	1	
10	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년) 각 1부.		1	
11	수행기관 국세 / 지방세 완납증명서		1	
12	현물산정 근거서류		1	
13	공장등록증(해당시)	해당시	1	
14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(해당시)		1	

- *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메일로 날인된 스캔본 1부를 제출하고, 발표평가 당일 원본(1번~14번)1묶음, 사본(1번~8번) 7묶음 제출(발표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)
- * 제출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- *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메일로 날인된 스캔본 1부를 제출(발표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)

□ 문의처

구미전자정보기술원	이제야 선임	054-479-2262	thekey@geri.re.kr
구미전자정보기술원	황홍비 연구원	054-479-2263	gerihhb0811@geri.re.kr

4

추진절차 및 일정

구 분	일 정	주요내용
과제공고	· 공고일 ~ 2023. 07. 07(금), 17:00 限	· 과제공모(홈페이지 등)
↓		
과제 접수	· 공고일 ~ 2023. 07. 07(금), 17:00 限	· 과제 접수
↓		
적합성 검토	· 2023. 07. 10.(월) ~ 07. 12.(수)	· 사업내용,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
↓		
평가위원회	· 2023. 07. 13(목) ~7.19(수)	· (평가위원회) 발표평가 ·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· 추후 세부일정 확정 및 통보
↓		
과제 선정	· 2023. 7월 4주	· 선정통보 및 이의신청 · 수정사업계획서 제출
↓		
사업계획 수정, 협약체결	· 2021. 7월 말	·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
↓		
1차 사업비 지급	· 2021. 8월 초	· 사업비지급(지원금의 70% 지급)
↓		
사업수행	· 2023.8.1 ~ 2024.04.30.	·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 (분기별 마지막 주)
↓		
중간평가 / 2차지원금 지급	· 2024. 1월 초~중	· 과제추진 및 수행결과보고 (필요시)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완성도 점검 · 2차 사업비지급(지원금의 30%)
↓		
결과평가 결과(연차)보고서 제출	· 2024. 4월 초~중 (협약종료 1개월 이내 제출)	·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
↓		
사업비 정산, 성과관리	·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(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)	· 사업비 정산 및 환수금 반납 (지정회계법인에 정산)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단계	평가방법	평가자(점검자)	평가내용
1	적합성 검토 (현장점검)	구미전자정보기술원	· 사업내용, 지원자격, 제출서류 등 적합성 검토 (*제출서류 및 연구환경 현장 점검 - 필요시)
2	발표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 산·학·연 전문가 7인 내외)	· 지원 필요성 / 추진계획의 타당성 / 기술성 / 사업성 등 평가
3	종합심의		· 수행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후 지원과제 선정

□ 평가위원 구성

- 구성인원 :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
 - * 평가위원장은 평가당일 평가위원 협의하에 결정
- 주요역할 : 수행과제별 발표평가의 선정 관련 심사 및 사업비 조정

□ 평가절차 세부내용

- 1단계 : 적합성 검토
 - 제출서류 검토, 사업내용의 부합성, 지원자격(참여제한) 적격 여부 검토
 - * 필요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장 점검 수행
- 2단계 : 발표평가
 - 신청 과제별 총괄책임자의 발표(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)를 통한 평가
 - * 총괄책임자 불참시 대리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중 상위자가 위임장 및 불참근거자료를 지참하여 참석 필수
 -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중에서 고득점 과제 우선 선정(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산정)
 -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『사업성』 ▶ 『기술성』 ▶ 『타당성』 ▶ 『필요성』 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정함(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)

○ 3단계 : 종합심의

-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지원과제 선정
- 선정기업의 과제포기시 차순위 기업 선정(공문으로 전달기관에 즉시 제출)

□ 평가기준

○ 평가배점표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 가 지 표	배점
필요성 (10)	기술개발 필요/시급성	○ 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관점에서의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	10점
타당성 (20)	추진계획 구체성	○ 既개발 여부검토 및 사전조사 / 준비성 ○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/실현가능성 ○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	10점
	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	○ 연구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○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내 이루고자 하는 개발 목표의 명확성	10점
기술성 (20)	개발목표의 차별성/ 혁신성	○ 개발기술의 유사제품(기술)과의 차별성/성장가능성 ○ 연구개발기술·제품의 특허출원/등록 가능성	10점
	추진체계 적절성	○ 연구개발방법의 구체성/타당성 및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성 및 참 여인력의 과업배치의 적절성 ○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기관(기업)간 업무분장 등의 적절성	5점
	총괄책임자 /연구원능력	○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 ○ 수행기관/참여연구원의 기술력/전문성, 역할분담/구성의 구체성	5점
사업성 (50)	사업화 가능성	○ 사업 종료 후 예상되는 제품(기술)의 완성도 및 경쟁력 수준	15점
	시장성	○ 제품의 경쟁력, 제품화 능력 및 생산능력 ○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,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	15점
	경제성	○ 수익창출 기대효과 및 매출향상 가능여부, 경제적 파급효과	10점
	사업화 추진의지	○ 사업화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가능성 ○ 기술이전의향서(해당시) ○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(해당시)	10점
합 계			100점

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약 체결(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·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)
-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분할(선금, 잔금) 지급
 - 1차: 70%, 2차: 30%(중간평가 후 지급)
-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또는 신규계좌 개설

□ 진도점검 및 관리

- 분기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전담기관에 보고서로 제출
(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)
- 점검내용
 - 추진일정 대비 추진현황
 - 사업비 집행현황(계획 대비 실적)
- 중간점검
 - 사업비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2차 사업비 지급(필요시 현장방문)
 -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(사업비 통장내역 점검 등)
 - 점검결과에 따라 “계속지원”, “지원중단” 결정
- 최종평가
 -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전후 전담기관의 제출안내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, 연구개발 목표 대비 추진실적, 상용화 여부 및 계획을 평가
 - * 사업비 집행 등의 사유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 - 제품상용화 고도화결과 수준, 수행방법, 파급효과, 사업화 정도, 성과물, 상용화 여부·계획 등

□ 신청제한

- 제안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 -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(주관기업, 주관기업의 대표, 참여기업, 참여기업의 대표, 총괄책임자 등)는 신청불가
 -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및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, 기술료 등의 미납기업
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
 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 기관 제외)
 - ① 기업의 부도
 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 - 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컨소시엄의 경우 모두)
 -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 - ⑦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,000%이상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,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
- 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기자본) X 100

□ 제재조치

-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, 각종 이행사항 위반, 불성실 중단·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를 제한하여,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행기관에 통보함

□ 기술료의 징수 : 대상

- (납부대상) 과제 종료(조기 종료 포함) 후, 평가결과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 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 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(※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증권 제출 필요)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	비고
중소·중견기업	구미시 지원금의 15%	

○ 기술료의 감경

유형별	기술료 감경료율
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“혁신성과”로 평가된 과제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%
실시기업이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40%
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%
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20%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- 증빙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,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. (단,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출 후에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)
- 관련근거 : 구미시 핵심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